

정관



	목	차
1	총	칙
2	주 식 과	주 권
3	사	채
4	주 주	총 회
5	이사 / 이사회 / 대표이사	
6	감 사 위 원 회	
7	계	산
	(부	칙)

제 1 장 총 칙

제1조 (상 호)

이 회사는 주식회사 대우건설(이하 "회사"라 한다)이라고 부른다. 영문으로는 DAEWOO ENGINEERING & CONSTRUCTION CO., LTD.(약호 DAEWOO E&C)이라 표기한다.

제2조 (목 적)

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.

1. 수출입업 및 동대행업, 중개업
2. 토목, 건축, 포장, 전기, 기계, 조경, 주택건설, 철강재설치, 항만, 준설, 수도 및 궤도설치, 소방설비 공사업
3. 정보통신공사업
4. 해외종합건설업(건축, 토목, 전기공사, 전기통신공사업 및 특수공사업)
5. 건설용역 및 군납업
6. 토목, 건축의 측지측량, 품질시험, 설계, 설계감리업
7. 환경오염 방지(수질오염, 대기오염, 소음진동 방지), 폐기물 처리(핵폐기물, 산업폐기물, 쓰레기), 상하수도 및 폐수 처리시설, 발전설비 및 발전설비 철골작업, 해양설비 구조물 등의 설계, 기기제작 설치 및 운영업, 분뇨처리시설, 오수정화시설, 정화조 또는 축산폐수정화시설의 설계, 시공업
8. 특정설비제조업
9. 토지개간, 간척 및 매립사업
10. 부동산에 대한 투자, 임대, 관리, 매매, 컨설팅 및 부동산 개발사업, 시장(아케이드)운영에 관한 사업
11. 국내외 자원개발 및 판매업
12. 건설자재 생산 및 판매업
13. 광산, 석산개발 및 판매업
14. 철구제품 제조 판매업
15. 중기 대여업, 중기 정비업
16. 정보처리, 교육등 각종 용역업, 정보기기대여업
17. 육상, 해상, 항공운송업 및 창고업, 유통업 및 도.소매업
18. 관광숙박업(호텔업 및 콘도미니엄업), 관광객 이용시설업, 관광편의시설업, 공중목욕장(실내수영장)업
19. 산림, 축산, 원예업 및 농업
20. 유료도로업 및 주차장운영업
21. 승강기 설치 공사업

22. 가스시설 시공업, 도시가스사업 및 가스관련사업
23. 기록매체출판업, 데이터베이스업, 기술연구 및 기술용역 수탁업
24. 원유정제 및 전력, 도시가스, 석유제품의 제조 및 판매업
25. 종합휴양업 및 전문휴양업, 유원지 운영업
26. 소프트웨어 개발, 판매 및 교육사업
27. 종합건설기술용역 및 산업설비용역업(설계, 감리, 컨설팅, 시운전, 유지보수)
28. 플랜트의 설계, 제작, 시공, 감리용역 및 보수, 운영업
29. 체육시설업
30. 종합환경영향평가 대행업, 교통영향평가 대행업 및 경관영향평가 대행업
31. 에너지 사용계획수립 대행업 및 에너지 절약전문업
32. 사회간접 자본시설 및 관련부대사업 투자, 운영업
33. 골재 채취 및 판매업
34. 노인복지시설 및 일반 요양시설 운영업
35. 원자력 이용업
36. 청소년 수련에 관한 사업
37. 여객자동차 터미널 사업
38. 산업단지 개발사업 및 산업단지 관리 운영업
39. 시설물의 안전진단 및 유지 관리업
40. 백화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업
41. 전력시설물의 설계업 및 동 공사 감리업
42. 문화교육 및 사설강습소 운영업
43. 전시장, 유기장, 및 공연장설치 및 운영관리업
44. 택지개발사업
45. 인터넷 전자상거래업
46. 벤처사업(벤처기업 발굴 및 투자육성)
47. 조립금속제품 제조 및 판매업
48. 석도설치 공사업
49. 시스템통합사업(소프트웨어개발, 공급, 통합자동화시스템분석, 개발설비 및 설치)
50. 유무선 통신설비 제조 및 판매업
51. 발전, 송전, 변전, 배전용 전기기기 제조 및 판매업
52. 전력, 전자기기, 산업제어기 및 제어시스템 제조 및 판매업
53. 신재생에너지사업
54. 내외국인 또는 법인과 전 각호에 관련되는 투자
55. 폐기물 해양 배출업
56. 토양정화(복원)업

- 57. 지하수정화업
- 58. 자산관리 및 이에 부수하는 업
- 59. 선박 대여업
- 60. 위 각호에 관련되는 부대사업일체

제3조 (본점 소재지)

- ① 회사는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.
- ②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국내외에 지점, 출장소, 사무소 및 현지 법인을 둘 수 있다.

제4조 (광고방법)

회사의 광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(www.daewooenc.com)에 한다. 다만,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광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일간 헤럴드경제에 게재한다.

제 2 장 주식과 주권

제5조 (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)

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700,000,000주로 한다.

제6조 (1주의 금액)

회사의 주식의 1주의 금액은 5,000원으로 한다.

제7조 (주식 및 주권의 종류)

- ①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는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우선주식으로 한다.
- ② <삭 제>

제7조의2 (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)

이 회사는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.

제8조 (우선주식의 수와 내용)

- ① 회사가 발행할 우선주식은 참가적, 누적적, 기한부, 의결권 없는 주식으로 하며, 그 발행총수는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1 이내로 하되 45,000,000주를 한도로 한다.
- ② 우선주식의 최저배당율은 액면가액 기준, 연 1%로서, 발행시 이사회가 배당율을 결정한다.

- ③ 보통주식의 배당율이 우선주식의 배당율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한다.
- ④ 우선주식에 대하여 어느 영업년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누적된 미배당분을 다음 영업년도의 배당시에 우선 하여 배당한다.
- ⑤ 우선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.
- ⑥ 회사가 유·무상증자 또는 주식배당으로 인해 발행해야 할 주식의 종류와 수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.
- ⑦ 우선주식의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6개월이상 10년이내의 범위에서 발행시 이사회 결의로 정하고 그 기간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. 그러나 위 기간 중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 한다.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

제9조 (신주발행)

- ① 회사의 신주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가 정한다.
- ②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 방법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.
-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주주 이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.
 - 1.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 결의로 일반공모증자 방식에 의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
 - 2.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
 - 3. 상법 제54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
 - 4.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6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
 - 5. 경영상의 필요시 액면총액이 금 2,000,000,000,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외국의 합작법인,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그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

제10조 (동등배당)

회사는 배당 기준일 현재 발행(전환된 경우를 포함한다)된 동종 주식에 대하여 발행일에 관계 없이 모두 동등하게 배당한다.

제11조 (일반공모증자)

- ① 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의 규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일반공모증자 방식에 의한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액 등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. 단, 이 경우 신주의 발행가액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8의 규정에서 정하는 가액이상으로 하여야 한다.

제12조 (주식매수선택권)

- ① 회사는 임직원에게(상법 시행령 제30조에서 정하는 관계회사의 임직원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 범위 내에서 상법 제54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. 다만, 상법 및 그 시행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이사회 결의로 회사의 이사를 제외한 자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.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 회사는 부여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②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을 임직원은 회사의 설립과 경영,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있는 자로 한다.
- ③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(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산정이 되는 주식을 말한다)은 제7조의 주식 중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.
- ④ 주식매수선택권을 일시에 재직하는 임원 및 직원 전원에게 부여할 수 없고, 임원 또는 직원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할 수 없다.
- ⑤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1주당 행사가격은 다음 각호의 가액 이상이어야 한다.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 1. 새로이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가격 중 높은 금액
 - 가.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
 - 나. 당해 주식의 권면액
 2. 자기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
- ⑥ 주식매수선택권은 이를 부여하는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7년 내에 행사할 수 있다.
- ⑦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임직원은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행사할 수 있다. 다만,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임직원이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망하거나 정년으로 인한 퇴임 또는 퇴직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.
- ⑧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0조의 규정을

준용한다.

- 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.
1.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
 2.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초래하게 한 경우
 3.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
 4.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

제13조 (시가발행)

- ① 회사는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서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시가로 발행할 수 있으며, 이때에는 그 발행가액은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.
- ② 제1항의 경우 이사회는 주주의 신주인수권에 불구하고 시가로 발행하는 신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할 수 있다.

제14조 (회사의 설립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)

회사가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기명식 보통주식 35,800,000주로 한다.

제15조 (명의개서대리인)

- ①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둔다.
- ②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 결의로 정하고 이를 공고한다.
- ③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전자등록, 주주명부의 관리,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.
- ④ 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증권의 명의개서대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.

제16조 <삭 제>

제17조 (주주명부의 폐쇄, 기준일)

- ① 회사는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금을 받을 자, 기타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일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 또는 질권자로 볼 수 있다.
- ② 회사는 매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며 매년 12월 31일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 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

있는 주주로 한다.

- ③ 제1항의 기간은 3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.
- ④ 제1항의 날은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날에 앞선 3개월내의 날로 정하여야 한다.
- ⑤ 제1항의 기간 또는 날을 정한 때에는 회사는 그 기간 또는 날의 2주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.

제 3 장 사 채

제18조 (전환사채의 발행)

- ① 회사는 사채의 액면가액의 총액이 금 2,000,000,000,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이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.
 - 1. 전환사채를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
 - 2.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
 - 3.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
 - 4.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6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에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
- ② 제1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 이를 발행할 수 있다.
- ③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사채의 액면가액의 총액이 금 1,900,000,000,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통주식으로, 금 100,000,000,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결권 없는 우선주식으로 하며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가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의 결의로써 정한다.
- ④ 전환사채권자가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사채발행일의 익일부터 그 상환기간의 직전일까지 한다. 다만, 위 기간 내에서 관계법규에 따라 이사의 결의로써 그 기간을 정할 수 있다.
- ⑤ 전환사채에 있어서 주식으로서 전환에 의하여 발행된 주식에 대한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에 관하여는 전환을 청구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말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.

제19조 (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)

- ① 회사는 사채의 액면가액의 총액이 금 600,000,000,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사의 결의로 주주이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.
 - 1.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
 - 2.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
 - 3.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
 - 4.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6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에서 신주인수권부사채

를 발행하는 경우

- ②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가액의 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.
- ③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은 사채의 액면가액의 총액이 금 500,000,000,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통주식으로, 금 100,000,000,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결권 없는 우선주식으로 하며, 그 발행가액은 액면가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이사회결의로써 정한다.
- ④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사채 발행일의 익일로부터 그 상환기일 직전일까지로 한다. 다만, 위 기간 내에서 관계법규에 따라 이사회결의로써 그 기간을 정할 수 있다.
- ⑤ 제1항의 신주인수권부 사채에 있어서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자에 대한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의 발행가액의 금액을 납입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말에 신주의 발행이 있는 것으로 본다.

제19조의2 (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)

이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.

제20조 (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)

제15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.

제20조의2 (사채발행의 위임)

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.

제 4 장 주주총회

제21조 (총회의 소집)

- ① 정기주주총회는 매 영업년도 종료후 3개월 이내에 소집하고,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결의나 기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집한다.
- ②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한다. 대표이사 유고시에는 제33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.
- ③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,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간 전에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. 다만, 회사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1 이하의 주식 소유주주에 대해서는 회일을 정하여 그 2주간 전에 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의

목적사항을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헤럴드경제와 동아일보에 2회 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서면에 의한 총회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.

- ④ 주주총회는 본점소재지에서 개최하되 이의 인접지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.
- ⑤ 회사는 상법 제542조의14 제1항에 따라 주주의 일부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지 아니하고 원격지에서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할 수 있는 방식의 총회를 개최한다.
- ⑥ 회사가 제3항에 따라 주주총회의 소집통지 또는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542조의4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하는 이사·감사후보자의 성명, 약력, 추천인 및 회사의 경영참고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. 그러나 회사의 경영참고사항을 회사의 본·지점, 명의개서 대행회사, 금융감독위원회, 한국거래소에 비치하는 경우에는 통지 또는 공고에 갈음할 수 있다.

제22조 (총회의 의장)

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가 된다. 대표이사가 2인 이상일 경우는 대표이사 중 이사회에서 미리 지명한 대표이사가 총회의 의장이 된다. 대표이사 유고시에는 이사회에서 미리 지명한 이사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23조 (의장의 질서유지권)

-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발언·행동을 하는 등 현저히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.
- ② 주주총회의 의장은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주의 발언의 시간 및 회수를 제한할 수 있다.

제24조 (주주의 의결권 행사)

- 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의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 대리인은 총회 개최 전에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- ② 주주가 2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이를 통일하지 아니하고 행사 할 수 있다. 이 경우 회일의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.
- ③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,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외에는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.

제25조 (총회의 정족수와 의결방법)

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에 달리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.

제26조 (의사록)

주주총회의 의사에 대하여는 그 경과와 요령과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, 의장과 출석한 이사 전원이 이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회사에 비치한다.

제 5 장 이사/이사회/대표이사

제27조 (이사의 수와 선임)

- ①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 12명 이내로 하되,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.
- ② 이사 중 독립이사는 이사 총수의 과반수로 하되, 3명 이상으로 한다.
- ③ <삭 제>

제28조 (임 기)

- ① 이사의 임기는 3년 이내로서 이사 선임시 주주총회에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.
- ② 이사의 임기가 재임중 최종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전에 만료한 때에는 그 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.

제28조의2 (책임감경)

- ① 회사는 이사의 상법 제399조에 따른 책임을 이사가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보수액(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)의 6배(독립이사의 경우는 3배)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한다.
- ②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이사가 상법 제397조(경업금지), 제397조의2(회사기회유용금지), 제398조(자기거래금지)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

제29조 (보 선)

- ① 이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여 보결선임한다. 그러나 법정 정원수가 되고, 또한 업무집행상 지장이 없을 때는 보결선임을 보류 또는 다음 정기 주주총회시까지 연기할 수 있다.
- ② 독립이사가 사임, 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관 제27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.

제30조 (보수)

- ①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에서 결정한다.
- ②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에서 정하는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.

제31조 (이사회)

- ① 회사의 이사회는 이사 전원으로 구성하고, 회사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의하며,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한다.
- ② 이사회 의장은 이사회에서 선임하며, 이사회 의장의 유고시에는 이사회에서 미리 지명한 이사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③ 이사회는 이사회 의장 또는 이사회 의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이사가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.
- ④ 제4항의 소집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이사는 소집권자인 이사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소집권자인 이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.
- ⑤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7일 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그러나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전기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.
- ⑥ 이사회의 결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한다.
- ⑦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, 경과요령, 그 결과 반대하는 이사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회사에 비치하여야 한다.
- ⑧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.
 1.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, 대규모 재산의 차입,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과 지점의 설치·이전 또는 폐지 등 회사의 업무집행은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.
 2. 이사는 대표이사로 하여금 다른 이사 또는 피용자의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.
 3. 이사는 중요한 경영사항 등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 4. 제3호의 중요한 경영사항 및 기타 업무집행상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운영규정에 따른다.
- ⑨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·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.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.
- ⑩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

제32조 (위원회)

- ① 회사는 이사회 내에 다음 각호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.
 1. 감사위원회
 2.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
 3. 경영관리위원회
 4. 리스크관리위원회

5. 보상위원회

- ② 각 위원회의 구성, 권한,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.
- ③ 위원회에 대해서는 제3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

제33조 (대표이사 등)

- ① 당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이사중에서 대표이사 약간 명을 선임할 수 있다.
- ② 당 회사는 업무상 필요에 따라 고문, 회장, 부회장, 사장, 부사장, 전무, 상무 약간 명을 선임할 수 있다.
- ③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. 그러나 대표이사가 수명일 때에는 각자 회사를 대표한다.
- ④ 대표이사 유고시에는 이사회에서 미리 지명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34조 (이사의 보고의무)

- ①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.
- ② 이사는 재임 중 뿐만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 하여서는 아니된다.

제35조 (고 문)

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고문 약간 명을 추대할 수 있다.

제 6 장 감사위원회

제36조 (감사위원회의 구성)

- ① 회사의 감사에 갈음하여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를 둔다.
- ②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.
- ③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독립이사이어야 하고, 독립이사 아닌 위원은 상법 제542조의10 제2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.
- ④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. 다만 상법 제368조의4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서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.
- ⑤ 감사위원회 위원은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후 선임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감사위원회 위원 중 2명은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.

- ⑥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과 해임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(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그의특수관계인, 그 밖에 상법시행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)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
- ⑦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이사를 선정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위원장은 독립이사이어야 한다.
- ⑧ 독립이사의 사임·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독립이사의 수가 이 조에 정한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.

제37조 (감사위원회의 직무)

- ①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.
- ② 감사위원회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.
- ③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.
- ④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외부감사인을 선정한다
- ⑤ 감사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4항 외에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.
- ⑥ 감사위원회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.
- ⑦ 제6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위원회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.
- ⑧ 감사위원회 결의에 대하여 이사회는 재결의할 수 없다.
- ⑨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.

제37조의2 (외부감사인 선임)

회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가 선정한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며 선임 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그 사실을 보고 한다. 단, 회사는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는 대신 외부감사인 선임사실을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거나,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(www.daewooenc.com)에 공고할 수 있다. 이때 공고기간은 감사대상 사업연도 종료일까지로 한다.

제37조의3 (책임감경)

감사위원의 책임에 대하여는 이 정관 제28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.

제38조 (감사록)

감사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,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위원회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.

제 7 장 계 산

제39조 (사업년도)

회사의 영업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, 매기 말에 결산한다.

제40조 (재무제표 등의 작성·비치)

- ①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와 영업보고서를 정기 주주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 1. 대차대조표
 2. 손익계산서
 3.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상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서류
- ② 감사위원회는 제1항의 서류를 받은 후 정기주주총회 회의일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- ③ 대표이사는 제1항의 각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제1항의 각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고, 감사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제1항의 각 서류를 이사회 결의로 승인할 수 있다.
- ⑤ 제4항에 따라 승인받은 각 서류의 내용은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- ⑥ 대표이사는 제1항 각호의 서류를 영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와 함께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 전부터 본점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.
- ⑦ 회사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해야 한다.

제41조 (이익배당)

-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 및 기타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.
- ② 당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제1항의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,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.

제41조의2 (중간배당)

- ① 당 회사는 사업연도 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 결의로 상법 제462조의3에 의한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.
- ②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제1항의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,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.
- ③ 중간배당은 직전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.
 1. 직전결산기의 자본금의 액
 2. 직전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
 3.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미실현이익
 4. 직전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하기로 한 금액
 5. 직전결산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목적을 위하여 적립한 임의준비금
 6. 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

제41조의3 (주식의 소각)

- ①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소각하고자 하는 경우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결의하여야 한다.
 1. 소각할 주식의 종류와 총수
 2. 소각하기 위하여 취득할 주식가액의 총액
 3. 주식을 취득하고자 하는 기간. 이 경우 그 기간은 이사회결의 후 최초로 도래하는 정기주주총회일 이전이어야 한다.
-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소각할 목적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.
 1.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2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방법에 의할 것.
이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2 제2항 제1호의 방법에 의한 때에는 그 취득기간과 방법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.
 2. 소각을 위하여 취득할 금액이 당해 사업연도말 상법 제4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는 한도 안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정하는 금액이하일 것
-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소각한 때에는 그 소각의 결의 후 최초로 도래하는 정기 주주총회에 제2항 각호의 사항과 주식을 소각한 뜻을 보고하여야 한다.

제42조 (배당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)

- ①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.
- ② 제1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회사에 귀속한다.

제43조 (준칙규정)

이 회사의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주주총회의 결의와 상법 및 기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 단, 본 정관에서 인용하는 법령이 변경 또는 폐지되고 관계법령에서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 관계법령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.

부 칙

이 정관은 2000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정관은 2001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12조 제1항, 제36조, 제41조의2의 개정규정은 개정 증권거래법 시행일로부터 그리고 제37조, 제37조의2의 개정규정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정관은 2002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정관은 2004년 3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정관은 2006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정관은 2007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정관은 2008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정관은 2009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정관은 2012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28조의2, 제37조의3, 제40조 제4항, 제5항의 개

정규정은 개정상법 시행일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정관은 2018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정관은 2019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7조, 제7조의2, 제15조, 제16조, 제19조의2, 제20조 개정규정은 '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'이 시행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정관은 2019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정관은 2021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정관은 2021년 6월 7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정관 제28조에도 불구하고, 개정일부터 선임되는 이사에 한하여 정관 제28조 개정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정관은 2022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정관은 2022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정관은 2023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정관은 2026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
다만, 제21조 개정사항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, 제27조 제3항은 2026년 9월 10일부터 시행하며, 제27조 제2항, 제28조의2, 제29조, 제32조, 제36조(제5항 제외) 개정사항은 2026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.